

참고 2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요

- **(개념)** 내국법인이 대·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,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**재단에 출연하는 기금**
- **(법령)*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법」 제20조의5(상생협력기금 설치 등)
 - * 관련법령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
- **(대상)*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
- **(용도)** 「상생협력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에 따른 총 14가지 용도*
 - * ①성과배분, ②기술협력, ③인력교류, ④환경경영협력, ⑤임금격차 완화, ⑥기금운용관리, ⑦생산성 향상, ⑧기술보호, ⑨창업지원, ⑩판로확대, ⑪거래공정화, ⑫문화확산, ⑬벤처투자, ⑭복리증진
- **(절차)** 출연기업이 **중소기업 지원 과제**(용도, 내역 등 계획)를 기획
→ 대·중소기업이 과제를 수행 →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**기금 지급**

<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 절차 >

<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 절차 >

출연협약 체결	기금출연	지원과제 기획/신청	지원과제 심사	과제수행	증빙자료 확인	기금지급
출연기업·협력재단	출연기업	출연기업	협력재단	출연기업·중소기업	협력재단	협력재단

* 「상생협력법」 제20조의5에 따라 기금은 **출연기업이 기금의 용도와 사업을 지정**

- **(혜택)** 기금 출연에 따른 **세제혜택** 등 인센티브 제공
 - * ① (세제혜택) 출연금의 10% 법인세 공제, 세법상 과세소득의 10% 범위내 비용처리,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과 시 기금 출연액의 3배를 비용으로 공제
 - ② (평가우대) 동반성장지수 최대 3점,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대 4.5점 반영
- **(경과)** ① 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」 발표('10.09) →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3 신설('10.12) → ③ 상생법 제20조5 신설('17.11) → ④ 상생법 시행령 제13조4 사용 용도 확대(벤처투자, 복리증진 추가, '24.11)